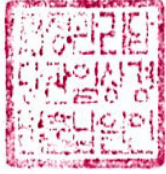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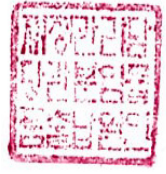


소관부서	회계직인명	서체 및 규격	인영	직인 폐기일자	비고
재정관리담당관	재정관리담당관 일상경비 출납원인	훈민정음체 1.8cm X 1.8cm		2018.12.31.	
	재정관리담당관 문임물품 출납원인	훈민정음체 1.8cm X 1.8cm			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42호

도시관리계획(마천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-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-478호(2005.12.29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816호(2013.12.20.), 제2015-542호(2015.08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40호, -441호(2017.12.01.)로 결정(변경)된 마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송파구 마천동 600번지의 1필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-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월 10일
서울특별시

가. 열람기간 : 2019. 1.10. ~ 2019. 1.24.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)

나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(☎02-2133-7053)

다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나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
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■ 공동주택용지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
			기정	변경
1	A3 A4	용도	·지정용도 -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 -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- 제2종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-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전시장에 한함) - 판매시설(상점 중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제외) - 교육연구시설 - 노유자시설 - 운동시설(옥외골프장 제외) - 업무시설 주)주상복합용지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(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) 비율은 용적률의 10%이상으로 계획한다 *용적률 10%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	·지정용도 -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 - 제1종근린생활시설(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- 제2종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- 노유자 시설 주)건축물의 비주거용도(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) 비율은 용적률의 10%이상으로 계획한다 *용적률 10%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

※ 공동주택용지(A3와 A4) 지정용도 외 변경사항 없음

라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)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43호

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
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82조 제1항 제1호, 제4호,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, 같은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

2019년 1월 10일

서울특별시

조합현황			취소이유	취소근거	취소일
인가번호	조합명 (이사장)	소재지(정관)			
2008-2	한국전인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(김성민)	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55(중곡동)	1년 이상 사업 미운영	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4호	2019.1.7.